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】

의안 번호	715
----------	-----

2022. 4. 25.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4. 13. / 백선아 의원 등 4명
- 나. 회부일자 : 2022. 4. 15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4. 25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건축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점검 대상 건축물 및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 ~ 제7조)
-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-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·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 ~ 제12조)
-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3조)
-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4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명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건축물 관리법」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4조 ~ 안 제7조에는 점검 대상 건축물 및 안전진단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8조에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9조 ~ 안 제12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·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 안 제13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,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시행일은 상위법인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시행일(2022.8.4.) 맞게 시행일을 2022년8월4일로 부칙에 명시하고자 함.
- 참고로 정기점검 대상 시설물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31개소이며,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(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) 점검대상은 6,493개소입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붙임 :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부.